

의안번호	2211525
의 퇴 인	백승아 의원
회 답 일	2025.09.01.
추계번호	25C3840
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9조의9 (유치원 민원의 처리)	(제1항) 교육부장관은 원장이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1.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2.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전자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3.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 4.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	의무규정
		(제2항) 교육감은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1. 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 및 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2. 제1항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세부 지원 방안 3.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9조의9 (유치원 민원의 처리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

- 현재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지침은 없으며, 교과전담교사가 존재하지 않아 담임이 행정 및 민원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
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민원 처리 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비용추계가 어려움
 - 개정안에 따라 수립될 계획은 유치원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, 민원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, 교직원 보호 방안,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그러나, 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, 교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, 계획 수립 주기 등 계획에 포함될 구체사항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유치원 교원은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적용 대상이며, 동법은 교육부장관과 시·도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 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'25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제작하여 유치원 현장에 배포한 바 있음
- 이에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현수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수	02-6788-4627	jhs@assembly.go.kr